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72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송기헌·강훈식·김영배

김태년 • 문진석 • 민병덕

이기헌 · 정성호 · 조승래

조인철 · 주철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 등으로 하여금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받도록 함. 또한, 조사서를 작성할 때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게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도록 함.

그런데,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와 그들이 작성하는 기술적 심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관련 절차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기관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 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 금 담당하게 하며, 샘물등의 개발을 임시 허가하거나 개발허가 유효기 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등에도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신뢰도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조의4 등).

법률 제 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1항 본문 중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지정 또는 변경"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 지정ㆍ변경
- 2.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 허가 또는 제12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 3. 제10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제15조 전단 중 "시·도지사"를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에게"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와 제1항에 따라 받은 기술적 심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환경영향조사 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본다.

제3조(환경영향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제8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는 <u>제8조의3제1항에</u>	<u>다음 각 호의 어</u>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	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
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지정	<u>려는 경우</u>
<u>또는 변경</u> 대상 지역의 시장·	
군수・구청장 및 주민(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신 설></u>	1.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
<u><신 설></u>	보전구역 지정·변경 2.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 허가 또는 제12조에 따른 유
<u> </u>	<u>효기간 연장</u> 3. 제10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 <u>발 임시 허가</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제15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등록)
대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사항 중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조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한다.

- 1. ~ 9. (생 략)
- ② (생략)
- 제18조(환경영향심사) ① 시·도 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 출된 조사서를 <u>환경부장관에게</u> 보내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한 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u>환경부</u> 	<u> 장관</u>
 1.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환경영향심사) ①	
<u>「한국수자원</u>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 <삭 제>	

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수 있다.<신 설>

③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와 제1항에 따라 받은 기술적 심사결과를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